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49
----------	-----

2021. 3. 23.(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3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3월 11일

-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가. 제안이유

-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국립 및 도내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료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약금 최소화 등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 추가(안 제3조)
-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조정(안 제9조)
 - 충북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평균으로 인상
- 자연휴양림 예약 신청 및 결제일 변경(안 제11조)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조정(안 제12조)
- 위약금 처리 면제 “재난” 정의 구체화(안 제13조)
 - 위약금 면제 대상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법 재난 명시화
-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적용 기준 일원화(안 제14조)
 - 위약금 및 배상금 최대 20%로 일원화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정진설)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사용료를 국립 및 도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와 형평성에 맞게 평균금액으로 상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약금 최소화, 면책기준 구체화 등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연휴양림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국립 및 도내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평균수준에 맞춰 비수기 5.3%, 성수기 22.8%(평균 14.1%)로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였음.

※ 전국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현황('20.10.26.)

(단위 : 원)

구 분	20~23㎡	24~28㎡	30~36㎡	50~55㎡	56~69㎡	71~84㎡
조령산	60,000 (42,000)	60,000 (42,000)	80,000 (56,000)	110,000 (77,000)	140,000 (98,000)	140,000 (98,000)
충북평균 (국립)	65,000 (42,500)	70,300 (43,500)	85,350 (57,250)	129,100 (83,700)	166,170 (103,000)	223,250 (148,370)
국유림		73,000 (40,000)	94,000 (52,000)	154,000 (87,000)	185,000 (110,000)	214,000 (145,000)

() 비수기

- 안 제3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였으며,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기준을 장애인의 경우 기존 1~3급과 4~6급에서 중증, 경증으로 구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7급까지 감면하도록 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에 따라 위약금 면책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 위약금 면제하도록 안 제13조제5항을 신설하고, 공공재의 특성과 도민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위약금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최대 시설사용료의 80% 위약금에서 20% 이내로 경감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1. 15.~'21. 2. 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국립 및 도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평균 금액으로 적용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위약금 처리 면제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법」의 “재난”으로 명시하고, 숙박형 공공시설의 위약금을 최소화하여 시설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설사용료의 20% 이내로 인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특수임무부상자”를 “특수임무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를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 50분까지”로, “결제”를 “결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3일 이내(성수기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 즉시”를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로,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하지”를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하지”로 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기준	사용시간	1일 요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숲속의 집	1동/2인 (33.2㎡)	1일	48,000	80,000	
	1동/4인 (36.0~37.4㎡)	1일	48,000	80,000	
	1동/6인 (32.9~46.7㎡)	1일	60,000	100,000	
	1동/8인 (50.8~54.8㎡)	1일	78,000	130,000	
	1동/10인 (58.1~63.4㎡)	1일	96,000	160,000	
	1동/12인 (116.6㎡)	1일	120,000	200,000	
복합휴양관	1실/4인 (25.2㎡)	1일	42,000	70,000	
	1실/6인 (37.8㎡)	1일	54,000	90,000	
	1실/10인 (62.9㎡)	1일	84,000	140,000	
산림휴양관	1실/4인 (32.4㎡)	1일	48,000	80,000	
	1실/6인 (42.6㎡)	1일	60,000	100,000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율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복합휴양관, 산림휴양관	장애인	중증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경증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병역명문가 가족		요금의 30% 할인	
	도민		요금의 20% 할인	
	도민대상 및 명예도민		요금의 50% 할인	

[별표 3]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

구 분	적 용	환불 및 보상규정	비 고
1.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가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나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다 사용당일 취소 ※ 예약금 입금 당일취소	-전액환불 -예약금의 10% 공제후 환불 -예약금의 20% 공제후 환불 -전액 환불	
2.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가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나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예약금환불 -예약금환불 및 시설사용료 10%배상 -예약금환불 및 시설사용료 20%배상	
3.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전액 환불	
4.사용기간 만료 전에 퇴실할 때 (재난관리부실)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불	

여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3일이내(성수기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 즉시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제13조(위약금 처리)

<신 설>

----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

제13조 ① ②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본조신설 2015. 1. 20.][제목개정 2018. 2. 2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9. 17., 2012. 1. 6., 2014. 12. 3., 2017. 6. 27., 2017. 12. 29.>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 9. 17.>[제목개정 2017. 12.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설사용료 조정 및 감면 등에 관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작성자 :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